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644 발의연월일: 2025. 5. 30.

발 의 자:김선교·최수진·김상훈

김정재 · 최보윤 · 김예지

서천호 • 김용태 • 김소희

김성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자산 등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은 상임이사, 비상임조합장 등의 임원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농협의 지배구조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조합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이와 같은 임원 의무도입은 법률상 의무임에도, 이를 위한 정관 변경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특별의결(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총회나 대 의원회에서 정관 변경이 지속적으로 부결될 경우, 의무도입 대상 임원 을 선출하지 못하고 공백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이에 농협법이 규정한 대로 지역농협이 일정 자산 규모 이상에 도 달하여 조합원이 아닌 이사, 상임이사, 상임감사, 비상임조합장을 두어 야 할 경우,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은 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의무도 입을 위한 정관 변경사항을 보고하고, 이러한 보고를 한 경우에는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법률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고 임원 의무도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임원 의무도입에 관한 특례) ① 제4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이사, 상임이사, 상임감사, 비상임조합장을 두어야 하는 지역농협의 조합장은 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의무도입에 관한 정관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정관 변경사항을 보고한 경우 제38조제1항 단서에 도 불구하고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라 정관 변경사항을 보고한 지역농협은 총회에 보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보고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공고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7조제1항 전단 중 "제29조부터 제49조까지"를 "제29조부터 제45조까지, 제45조의2,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로 한다.

제17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임원 의무도입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 의무도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이사, 상임이사, 상임 감사 및 비상임조합장을 두어야 하는 지역농협의 조합장은 이 법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 변경사항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5조의2(임원 의무도입에 관한
	<u>특례) ① 제45조제1항부터 제4</u>
	항까지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이사, 상임이사, 상임감사, 비상
	임조합장을 두어야 하는 지역
	<u> 농협의 조합장은 총회를 소집</u>
	하여 임원 의무도입에 관한 정
	관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
	<u>다.</u>
	② 제1항에 따라 정관 변경사
	항을 보고한 경우 제38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5조제1
	항제1호에 따른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u>본다.</u>
	③ 제1항에 따라 정관 변경사
	항을 보고한 지역농협은 총회
	에 보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고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공고 방법 등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u>한다.</u>

제107조(준용규정) ① 지역축협에	제107조(준용규정) ①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5조	
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2항	
·제3항·제5항, 제20조, 제21	
조, 제21조의3, 제22조부터 제2	
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	
터 제28조(같은 조 제2항은 제	
외한다)까지, 제29조부터 제49	제29조부터 제45
<u>조까지</u> , 제49조의2, 제50조, 제5	조까지, 제45조의2, 제46조부터
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49조까지
제56조까지, 제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57조의2, 제58조	
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	
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및	
제76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	
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	
농협"은 "지역축협"으로, "농산	
물"은 "축산물"로 보고, 제24조	
의2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2	
호"는 "제106조제2호"로, 제28	
조제5항 중 "제19조제1항"은	
"제105조제1항"으로, 제30조제1	
항제1호의2 중 "제57조제1항제	
2호"는 "제106조제2호"로, 제49	
조제1항제12호 중 "제57조제1	

항"은 "제106조"로, 제57조제2 항 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7조제3항 중 "제1항제3호" 는 "제106조제3호"로, 제57조제 4항 중 "제1항제7호"는 "제106 조제7호"로.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7조제5항제2호 중 "제1항제2호"는 "제106조제 2호"로, 제57조제6항 중 "제1 항"은 "제106조"로, 제58조제1 항 단서 중 "제57조제1항제2호 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 사업은 제외한다) • 바목 • 사목 · 차목, 제3호마목 · 사목 · 아 목, 제5호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는 "제106조제2호가목 (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 은 제외한다) • 바목 • 아목, 제3 호마목 · 사목 · 아목, 제5호(복 지시설의 운영에만 해당한다), 제7호 및 제10호"로, 제59조제2 항제1호 중 "계약재배사업"은 "계약출하사업"으로, 제67조제3 항 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06조제1호"로 본다.

(2)	(생	략)
(')	(\(\Lambda \)	C+ 1
(4)	()	-1

제172조(벌칙)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u>1.</u> ~ <u>3.</u> (생 략)

③ • ④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	172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1. 제4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임원 의무도입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자
	<u>2.</u> ~ <u>4.</u> (현행 제1호부터 제3
	호까지와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